무배당 My Choice 변액연금보험(Step형)

메트라이프생명보험회사

확 인 서

무배당 My Choice 변액연금보험(step형)을 개정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09 년 01 월 14 일

메 트 라 이 프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선임계리사 차 금 룡

사 업 방 법 서

(사업 방법서 별지)

무배당 My Choice 변액연금보험(Step형)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My Choice 변액연금보험(Step형)

- 종신연금형(10년 보증지급형)

(단, 연금지급개시시점에 종신연금형(20년 보증지급형), 상속연금형 또는 확정연금형(10년, 15년, 20년 확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2. 가입나이

가. 8년, 10년납 : 만15세 ~ [연금지급개시나이-15세]

나. 15년납 : 만15세 ~ [연금지급개시나이-20세]

3. 보험기간

가. 연금지급개시나이 : 45세 ~ 80세

나. 제1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다. 제2보험기간

(1)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2)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확정지급기간까지

4.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가. 납입기간 : 8년, 10년, 15년납

나. 납입주기 : 월납 (추가납입보험료 없음)

다. 최소거치기간(보험료 납입완료후 연금지급개시까지의 최소기간)

(1) 8년납: 7년(2) 10년납: 5년

(3) 15년납: 5년

5. 납입보험료의 한도

이 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로 한다.

※ 월납보험료: 1구좌 기준 매월 25만원 이상 매월 100만원 이하

6.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에 관한 사항

가.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제1보험기간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을 말한다. 보험료가 납입될 경우 월납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와 동일한 금액을 직전 최저사망보험금에 가산한다. 단, 최저보증 자동증액(Step-Up)에 의해 최저사망보험금은 증액될 수 있다.

나. 최저연금적립금

최저연금적립금이라 함은 연금지급 개시시점에서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 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납입기간 및 제1보험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다. 최저연금적립금 은 연금을 수령하는 계약에 한하여 보장한다. 보험료가 납입될 경우 월납보험료(특약보험료 제 외)에 아래의 납입기간별, 제1보험기간별 해당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을 직전 최저연금적립금 에 가산한다. 단, 최저보증 자동증액(Step-Up)에 의해 최저연금적립금은 증액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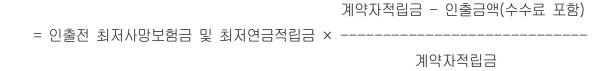
납입기간	제 1 보험기간에 따른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율	
	15년 ~ 19년	20년 이상
8 년납	110%	120%
10 년납	110%	120%
15 년납	해당사항 없음	115%

다. 최저보증 자동증액(Step-Up)

(1) 최저보증 자동증액(Step-Up)이란 매5년 계약 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이 그 시점의 최저사 망보험금이나 최저연금적립금을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그 초과분을 최저사망보험금이나 최저연금적립금에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최저보증 자동증액(Step-Up)이 이루

어진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또는 최저연금적립금은 해당 계약 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 전 부로 변경된다.

- (2) (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자적립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은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 · 인출후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



· 감액후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

(3) (2)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을 계산하는 경우의 "인출전(감액전)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이라 함은 해당 인출(감액) 발생 전에 기인출 또는 기감액이 발생했던 경우 (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을 말한다.

7. 최저보증 자동증액(Step-Up)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일로부터 매5년 계약 해당일마다 계약자적립금 전부를 새로운 최저사망보험금 또는 최저 연금적립금으로 하는 최저보증 자동증액(Step-Up)은 최저사망보험금 또는 최저연금적립금이 증액되는 경우 계약자의 요청이 필요 없고 자동적으로 실행된다.
- 나. 최저보증 자동증액(Step-Up)이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입기간이나 제1보험기간이 실행일 이후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최저보증 자동증액(Step-Up)은 최초의 계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신계약비가 부가되지 않는다.

다. 최저보증 자동증액(Step-Up)이 실행된 이후라도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 증비용은 변동되지 않는다.

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한다.
-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 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 사항을 일간신문(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 (3)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은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 (4)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은 전액 일반계정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예정 이율로 부리한다.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은 사망보험금이 사망시점의 최저사망보험금 보다 적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부족분으로 사용한다.
- (5)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은 전액 일반계정의 최저연금적립금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예정 이율로 부리한다. 최저연금적립금보증준비금은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 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사용한다. 최저연금적립금보증준비금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유지계약의 최저연금적립금기준준비금 합보다 적을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일반계정에서 부담한다.
- (6) 계약소멸, 해약 등 감소계약이나 연금지급이 개시된 계약에 대한 (4)호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 및 (5)호의 최저연금적립금보증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처리한다.
- (7)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적용한다.

나. 펀드의 유형 및 수

-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가) 채권형: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회사채 [신용 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량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운용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다.
 - (나) 가치주식형 : 우량주식(거래소 및 코스닥 종목, 단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상을 투자하고,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기업의 펀더멘탈(배당, 이익, 매출 등)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투자하고, 정부·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을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 투자하는 펀드
 - (다) 배당주식형: 우량주식(거래소 및 코스닥 종목, 단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상을 투자하고,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고배당을 지급하는 종목과 기업의 펀더멘탈(배당, 이익, 매출 등)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투자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 투자하는 펀드
- (2) (1)호에서 운용 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상기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 다.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에 관한 사항
 - (1) 펀드 종류별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다음과 같다.

(기준:특별계정적립금)

구 분	특별계정 운용보수	
	매년	매일
채권형	0.48%	0.00131507%
가치주식형	0.78%	0.00213699%
배당주식형		0.00213099%

(2) 펀드 종류별 특별계정 수탁보수는 다음과 같다.

(기준 : 특별계정적립금)

구 분	특별계정 수탁보수	
	애년	매일
채권형		
가치주식형	0.02%	0.00005479%
배당주식형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1) 펀드 선택

- (가)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나.'항 (1)호에서 정한 펀드 각각에 대하여 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단, 편입비율 선택시 주식형 편입비율은 주식형 최고 편입비율(제1보험기간이 20년 이상: 40%, 제1보험기간이 20년 미만: 35%)이하 범위에서 편입해야 하며, 펀드별 편입비율은 5%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 (나) (2)호에 따라 펀드 적립금을 이전할 경우에 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은 변경된 펀드 적립금 비율을 따른다.

(2) 펀드 변경

-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보험년도 중 4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 적립금의 일부 이전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단, 펀드 적립금 이전후 주식형 펀드의 적립금 비율은 계약 체결시 결정된 주식형 최고 편입비율(제1보험기간이 20년 이상: 40%, 제1보험기간이 20년 미만: 35%)이내로 제한되며, 5%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단, 펀드적립금의 이전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이전해야 한다.
- (나) 펀드 적립금의 이전시 주식형 펀드의 적립금 비율은 1회당 5%씩만 높일 수 있다.
- (다) 회사는 (가)에 의한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2영업일』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 (라) 회사는 (가)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을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의 현금 이전 시 공제한다.

마. 펀드자동재배분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분기마다 '라.'항 (1)호에 따라 계약자가 정한 펀드별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 된다. 이 경우 펀드자동재배분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르며,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 (2) (1)호의 경우 분기 도중에 계약자가 '라'항 (2)호에 따라 펀드의 적립금 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적립금 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된다.

바.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에 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사.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 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좌당 기준가격 = ------

특별계정의 총 좌수

- ※ 당일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3) 자금이체시 기준가격
 - (가) 자금이체시 적용하는 각 펀드의 기준가격은 (나)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한다.
 -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한다.

- (a)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b)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단, 계약자의 임의해지는 제외)
- (c) 월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
- (d) 제1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
- (e) 펀드자동재배분을 실행하는 경우
- (4) 펀드의 기준가격 산출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펀드의 공정한 기준가격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출 등이 연기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한 경 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출 등을 개시한다.

- (가) 현저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펀드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나)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펀드 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라) 펀드 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펀드자산을 매각하여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마) 펀드 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펀드자산을 매각하여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바) 대량의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시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 할 수 있다.
- (2) (1)호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가)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 로 한다.
 - (나) (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다)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자.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6조 제2항에 의한 제비용 및 보수,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의

한 회계감사비용, 제100조 제5항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비용 및 제149조에 의한 투자증권 평가비용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할 수 있다.

차.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가)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나)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다) (가) 내지 (나)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1)호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1)호 및 (2)호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9.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단,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납입 후 유지비 제외)를 제외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한다)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계산하여 사업방법서 16조'가.'항에 따라 이체한다.
 - (2)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 (3)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처리하는 경우

- (4)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 (3)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5) 월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 (단, 월공제액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6) 제1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
 - (가) 연금지급개시일에 해당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나) 연금지급개시일의 계약자적립금이 회사가 보증한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작을 경우에는 최저연금적립금보증준비금을 사용하고,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클 경우 에는 최저연금적립금보증준비금 중 해당 계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처리한다.
 - (다) 일반계정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 중 해당 계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처리한다.
 - (7)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특별 계정의 투자수익률로 한다.
 - (2) (1)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 시 기준가격 적용일로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11.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제1보험기간 중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20%범위 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연1회에 한하여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 인출 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한

다. 단. 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단위로 한다.

- 다. 인출금액은 인출후 계약자 적립금이 1구좌당 1,500만원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다.
- 라. 『중도인출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12.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나.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단, 계약자의 임의해지 시는 『해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 시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까지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적립금과 연체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 (자연식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제외,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 계정으로 재투입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한다.
- 다. '나.'항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을, 연체보험료 완납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승낙일로 한다.

13.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14.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보험의 해약환급금(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 적립금 계정에 적립한다.
- 다. 계약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이경우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적립금은 『상환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대출시 펀드별 분배금액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투입한다. 또한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할수 있다.
- 라. 계약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제1보험기간 종료 1년전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 마. 회사는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가. 이 보험의 제2보험기간의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나. 공시이율의 산출
 - (1) 공시기준이율 공시기준이율 = 0.5 × 시장금리 + 0.5 × 운용자산이익률
 - (2) 시장금리

시장금리는 객관적인 외부지표를 반영한 것으로서, 공시기준이율 산출시점 직전 3개월의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을 각각 가중이동평균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시장금리 =
$$\frac{A_1 + A_2}{2}$$

A, : 통화안정증권(364)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 국고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가중이동평균이율
$$(A_i) = \frac{Mi(-3) + Mi(-2) \times 2 + Mi(-1) \times 3}{6}$$

각각의 이율에 대하여 Mi(-3)은 직전 3개월, Mi(-2)은 직전 2개월, Mi(-1)은 직전 1개월 이율

- (주) ① 통화안정증권(364일) 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에 서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 (364일)의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한다.
 - ② 국고채수익율은 한국증권업협회에서 매일 공시하는 10년만기 국고채권의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한다.

(3)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이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6개월간의 「운용자산수익율」에서 「투자지출율」을 차 감하여 산출하며, 운용자산수익율 및 투자지출율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 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한다. 단, 비정기적인 수익 및 비용(유가증권 평가손익 및 매각손익 등)은 제외한다.

- (4) 공시기준이율을 기준으로 운용자산의 장래 예상수익률 및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을 공시이율이라 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 다. '나.'항 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동종상품('나.'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한다.
- 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로 한다.

16. 기타

가.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2) (1)호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가) 1회 보험료는,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까지는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단,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펀드의 투자수익률을 투입비율로 가중평균한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 (나)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경우 납입기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 납입기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로 하며, 납입일부터 납입기일까지는 납입보험료를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을 이체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한다.
- 나.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적용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제1보험기간중 연금전환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연금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기초율은 전환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 (3)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및 기초율을 적용한다.

라. 선납 부험료

선납 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 보험료는 월납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선납 보험료는 납입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한다.

마. 계약자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체결이후 제1보험기간동안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계약자적립금 변동에 관한 사항
- (2)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약시 해약환급금

바.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 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특별계정 총 좌수
- (2) 특별계정 기준가격
- (3) 특별계정 자산총액
-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 (7) 특별계정운용보수
- (8) 특별계정수탁보수
- (9)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 (10)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 사. 이 보험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월납보험료 × 12 × Min{납입기간, 10}

아. 한 건의 계약으로 여러 계좌를 가입할 경우에는 한 계약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및 보험계약청약서로 운영한다.

보험증권 서식

보험계약청약서 서식